

2003. 11.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 관)

1. 계룡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등징수조례안
2.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3.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계룡시공중보건 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전문위원 김 세 현

계룡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역 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이며, 조례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이며 조례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됨.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검토의견

-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보건의료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 검토의견

- 공중보건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민 의료활동을 촉구하고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운영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